

## II 유상동승자

편 집 : 손해사정사 박성정)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판결요지	동승 과실	사건번호
택시승객,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차에 받힘, 택시는 좌회전 위반.	0%	서울고법 86나1804
조수석에 탄 화주, 야간, 앞에 선 차를 추돌.	0%	서울고법 86나3988
지프차 보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그 요청으로 원고는 지프차 뒷좌석에 동승, 안개, 과속(시속 20km 이상), 원고는 운전면허 소지, 조수석엔 선임 탑승자 있고, 앞차를 추월하다 뒤집어져 반대방향 트럭에 받힘.	0%	서울고법 85나611
택시승객, 추석성묘 정원 5명인데 7명이 탑승, 시속90km(과속),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행하다 우측에서 40km로 진입한 봉고차에 우측 뒷문부분 받힘, 우측 시야장애를 승객들이 초래.	20%	서울고법 86나2955
조수석에 탄 화주, 운전수 졸음운전으로 앞차 추돌.	0%	서울고법 86나3931
택시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택시 중앙선침범으로 반대차와 부딪힘.	10%	서울고법 86나2651
버스승객, 교량 통과 무렵, 교량상판이 붕괴되어 추락면하기 위하여 과속으로 내려앉은 부분과 내려앉지 않은 부분 사이의 틈을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승객 부상. 불가항력주장 배척(앞차의 진행 상황으로 알 수 있었다)	0%	서울고법 86나2652
버스 승객, 만취하여 행패 부리므로 손님들 다 내려주고 피해자1인과 함께 파출소 신고하러 가던 중 30도 우곡각지점을 시속60km이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왼쪽에 열려있던 가로53cm, 세로72cm 창문 밖으로 추락, 부상.(고의로 뛰어내렸다는 면책항변 배척)	60%	서울고법 86나3661
자동차 대여회사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승용차 대여받아(렌트카) 주행 중, 제한시속 60km를 70km로, 새벽 어둡고 비로 미끄러운 길을 운전수가 중앙선 침범 20cm 가다가 반대차량과 충돌로 동승 중인 차량 임차인들이 사상.	0%	서울고법 87나193
소속회사의 작업 버스에 타고 가다 작업 중에 도착하여 동료인부는 다 내	40%	서울고법

1) 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前) PNS손해사정법인, (前) PNS법과학기술연구소, (前)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석사) “논문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판례중심)”

린 뒤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던 중 위 버스가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뒤늦게 버스에 성급히 내리다가 굴러 떨어진 후 4개월간 약만 먹으며 작업 계속하여 악화됨, 2개월 전에도 소속회사 설치 도랑에 굴러 떨어져 다친 상처도 있었음.		87나471
13세 소년, 버스에 올라섰다가 우산을 출입문 밖으로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고 급격히 출입문으로 내려서다가 개문발차하는 버스에서 추락하여 사고, 운전수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 및 출입문 개폐 미확인, 승객은 주의 안하고 출입문 접근.	10%	서울고법 87나1261
사고 경위불명, 종합병원 의사가 응급차에 동승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버스와 충돌, 의사는 응급차 운전수에게 단속의무 없다.	0%	서울고법 86나2828
택시 운전수 졸음운전으로 전봇대 받음. 앞자리 승객의 과실여부	0%	서울고법 86나915
고속도로를 화물차 운전하던 가해 운전수가 조수와 잡담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다른 화물차 충격. 가해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화주의 과실	0%	서울고법 86나1805
택시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요추압박 골절상, 피해자과실	10%	서울고법 87나3842
트럭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충돌사고, 경추 및 요추부 상해. 피해자과실	10%	서울고법 87나3219
야간운행 중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석 뒤에 있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당한 조수.	0%	서울고법 87나2868
담당 운전사로서 동료에게 운전 허용,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도로 이탈하여 길옆 3.4m 아래 논으로 추락, 운전미숙인데도 사고방지 위한 적절한 지시 안한 과실.	50%	서울고법 87나3892
정원초과 탑승,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피해자과실	0%	서울고법 87나4297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내리막길, 과속운전으로 단속 경찰에 적발, 원고는 운전자와 국민학교 동창생. (과속운전 제지않은 과실과 안전벨트 매지 않은 과실)	20%	서울고법 87나4025
야간, 편도2차선의 강변도로, 피고는 무면허로 음주한 채 승용차 운전하고 가다가 진로 잘못 판단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차선으로 들어감, 원고는 피고와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같이 음주 후 조수석 승차.	30%	서울고법 88나6124
선글라스를 끼고 택시 앞좌석 승차, 안전벨트 미착용, 우안 안구파열. 피해자과실	20%	서울고법 88나18332
경운기의 적재함에 동승, 가해차량이 선행 트럭 추월하여 중앙선 넘어오다가 경운기와 충돌.	15%	서울고법 88나18783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체 두동강, 사망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망인과실여부	0%	서울고법 88나24009